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1
----------	-----

2022. 2. 10.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28. 강남구청장

나. 상정의결

-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2. 10.)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며, 현재 제작되지 않는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와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부 지침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요령을 명확히 하여 재활용품 배출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신설(안 제11조의2)
- 나. 종량제 봉투 제작 종류 및 규격 변경 :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용 및 100L 봉투의 삭제(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별표3, 별표4)
- 다. 재활용 품목 중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을 구분하고 배출요령을 구체화함.  
(별표 2)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1.12.3. ~'21.12.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 평가 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 1 조례안의 취지

- 중앙정부(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이하 '지침')(2019.3)을 반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음.

<표> 주요 개정내용

변경내용		비고
현행	개정안	
·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b>없음.</b> ·재활용 가능품목: <b>7종</b> ※ <b>플라스틱류에 스티로폼 포함</b> ·종량제 봉투 종류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b>사업장용(삭제),</b> 공공용 -용량: 5L, 10L, 20L,30L, 50L, 75L, <b>100L</b>	·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b>설치</b> ·재활용 가능품목: <b>8종</b> ※ <b>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 구분</b> ·종량제 봉투 종류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용량: 5L, 10L, 20L,30L, 50L, 75L, 100L(공공용)	·배출요령 구체화  ·사업장용 100L(영업용) 삭제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

- 2017년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미화원(2명)이 근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이에 중앙정부는 2019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음.
- 같은 법 시행규칙<sup>1)</sup>에는 ① 청소차량 후방 영상장치 설치·운영 ② 안전화·안전조끼 등 보호장구 지급 ③ 운전자를 포함해 3인 1조 원칙 등이 포함되었음.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이에 집행부는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명시함과 동시에 조례에 위임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1) 청소차량 안전기준(법 시행규칙제16조의3 제2항)과 주간작업 원칙

- 법 시행규칙은 ①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며, ② 청소차량의 덮개가 갑자기 닫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③ 작업도중 쓰레기 압축장치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바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재활용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가로 청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경우에는 야간근무시 수작업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음.
- 집행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주간근무로 전면 전환할 경우 출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일부 상가지역 주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작업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안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그 예외를 둔 바, ‘①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인정하고 있음.
- 새벽시간대(오전4~오전6시)에 이루어지는 청소작업을 모두 주간근무로 전환할 경우, 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의 특성상 일부 구역의 오전시간대 생활폐기물이 방치된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② 차량 혼잡시대에는 원활한 수집운반행위가 곤란할 수도 있으며, ③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등에는 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 있다고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주간근무

예외규정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 그러나 새벽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는 청소차량 유압기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주간 근무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여 주간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 3인 1조 작업 원칙

-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등 수집·운반 작업(자동상차장치를 활용하지 않는 작업) 중에 미화원 1명이 들기 어렵거나 일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sup>2)</sup>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환경부 지침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3인 1조로 작업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②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계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한 작업 ③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④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⑤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⑥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인 1조 작업의 예외를 두었음.

2)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제3조(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8호내지 제10호 해당하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3) 분리배출 품목 항목 추가

- 환경부는 재활용품 혼합배출·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종전 플라스틱으로 분류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하도록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출되었음.
- ※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 및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재활용가능품목에서 페트병,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플라스틱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혼선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류로 나누고, 플라스틱류의 세부 품목을 투명페트병과 그 외 플라스틱 제품으로 구분하였음.

### 4)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금지

- 폐기물관리법(제18조)<sup>3)</sup>과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7호)<sup>4)</sup>에 따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종전에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방식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여 자치구가

3)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6. (생략)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배출자 처리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용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이용이 중단되었음.

- 개정안은 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별표에 명시된 쓰레기 규격봉투 종류에서 ‘사업장용’을 삭제하였음.
- 사업자가 사용하는 대용량(100kg) 종량제 봉투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됨.

### 3 종합 의견

- 금번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안전 기준을 신설하고, 기폐지된 사업자용 종량제 봉투부분을 삭제하며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른 재활용품 가능품목 등을 명확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중앙정부(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2019년 3월 변경되었고,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20년 8월 내려왔으며, 2020년부터 1월부터 사업자용 종량제 봉투 사용금지가 본격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조례안 개정 계획(2021년 11월)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겠음.
- 법과 시행령, 규칙 및 조례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에 규범 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 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참고자료

### □ 강남구 환경 미화원 재해 현황

년도	부상	떨어짐	기타
2017년	6	2	4
		1. 떨어짐 -암롤박스 상부 슬라이딩도어를 열던 중 미끄러져 떨어짐  2. 떨어짐 -차고지 내 생활폐기물 차량 파카 실린더 교체작업을 하기위해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떨어짐	1. 기타 : 미끄러짐 - 차고에서 이동 중 결빙 바닥에 미끄러짐 2. 기타: 부딪힘 - 종량재봉투 상차작업 중 후진하는 청소차에 어깨를 부딪힘 3. 기타 : 미끄러짐 종량제 봉투 수거 중 캔을 밟고 미끄러져 손목 골절 4. 기타 : 미끄러짐 음식물 수송 하차 중 계단에 미끄러져 무릎 인대 파열
2018년	5	1	4
		1. 떨어짐 -청소차량 적재함에서 폐기물(낙엽마대등)을 내리려고 적재함 뒷문을 열고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떨어짐	1. 기타 : 넘어짐 - 자전거를 타고 미화원휴게실로 이동 중 넘어짐 2. 기타 : 찢림 - 생활폐기물 수거중 봉투를 운반하다 봉투에 깔이 들어있어 무릎 봉합 3. 기타 : 넘어짐 - 야간 재활용 상차 중 도로경계석에 발이 걸려 넘어짐 4. 기타 : 무리한 동작 재활용 수거시 반복된 어깨 사용으로 우측 어깨에 질병이 발생하여 산재 승인
2019년	7	2	5
		1. 떨어짐 -차고에 주차한 본인 차량 지붕 위에서 전지작업 중 떨어짐  2. 떨어짐 -재활용폐기물(재활용망)을 차량 적재함 위에서 털던 중 전깃줄(통신선)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짐	1. 기타 : 끼임 - 아파트 내부도로가 협소하여 주변 장애물을 치우던 중 함께 작업하던 청소차량 바퀴에 발이 끼임 2. 기타 : 무리한 동작 - 음식물수거를 위해 음식물수거함을 끌던중 무릎에 통증 발생 3. 기타 : 찢림 - 종량제 봉투 폐기물을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여 밀어넣던 중 봉투 내에 섞여있던 날카로운 물건(깨진 유리로 추정)에 손을 찢림 4. 기타 : 무리한 동작 - 재활용폐기물을 발로 밟아가며 수거 작업을 하던 중(차량 적재함에서 망에 들어있는 재활용을 털면서)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인대가 파열



				5. 기타 : 미끄러짐 - 재활용 수거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발목 골절
2020년	5	-		5 1. 기타 : 베임 - 종량제봉투 옆을 지나가던 중 빠져나온 유리 파편에 발목 베임 2. 기타 : 불균형 동작 - 재활용품 수거 중 적재함 내부에서 재활용 망을 비우다 미끄러지면서 적재함 내부에 손목 부상 3. 기타 : 찢림 - 1명 대형폐기물 수거시 깨진 병에 손목을 베임 병합 4. 기타 : 넘어짐 - 바닥에 산재된 이물질을 밟아 미끄러지며 넘어짐 5. 기타 : 무리한 동작 - 재활용 상차를 위해 스티로폼을 들어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낌 6. 기타 : 찢림 -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 중 깨진 유리에 다리를 찢림  ※1명이 2가지 중복 부상 발생
2021년	4	2	1. 떨어짐 - 대형폐기물 수거후 선별장에서 뒷문을 개방하던 중 짐이 몸으로 떨어져 같이 넘어짐  2. 떨어짐 - 재활용 압착차량 상부에 스티로폼을 상차하던 중 떨어짐	2 1. 기타 : 넘어짐 - 작업 종료 후 휴게실 앞 대리석 밟아 미끄러지며 넘어짐 2. 기타 : 넘어짐 - 강설에 의한 빙판으로 인한 낙상 3. 기타 : 동상 - 재활용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추운 기온으로 인하여 손가락에 동상 발생  ※1명이 2가지 중복 부상 발생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1
----------	-----

제출연월일 : 2022. 1. 28.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청소행정과

### 1. 제안이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며, 현재 제작되지 않는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와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부 지침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요령을 명확히 하여 재활용품 배출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신설(안 제11조의2)
- 나. 종량제 봉투 제작 종류 및 규격 변경 :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용 및 100L 봉투의 삭제  
(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별표3, 별표4)
- 다. 재활용 품목 중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을 구분하고 배출요령을 구체화함 (별표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1.12.3. ~'21.12.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 평가 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법 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본문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영업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를 “영업용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업용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를 “영업용봉투”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사업장용봉투는 옅은 녹색, 공공용봉투”를 “공공용봉투”로 한다.

제21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제16조제3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전단지, 종이박스, 책자, 노트, 파쇄된 종이, 종이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li> <li>▷ 파쇄된 종이는 투명봉투에 담아서 종이류와 함께 배출</li> <li>▷ 종이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시에는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물로 헹군 후 배출</li> </ul>
2. 종이팩류	종이팩(음료수, 우유팩 등),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3.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li> <li>▷ 뚜껑은 재질에 따라 배출</li> </ul>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화재의 위험이 높은 제품으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따로 모아 배출
4. 고철류	공구, 철사, 못, 전선, 알루미늄, 스텐 등	▷ 투명봉투에 따로 모아서 배출
5.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병뚜껑은 재질따라 분리 배출</li> <li>※ 소주병,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 이용</li> </ul>
6.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지를 제거하여 뚜껑을 달아 배출
	그 외 플라스틱 제품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이 묻지않은 상태로 배출
7.스티로폼류	페스티로폼,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li> <li>▷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시에는 물로 헹군 후 배출</li> </ul>
8. 비닐류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 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ul>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규격봉투가격

(단위 : 원)

구분	재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 고
5 ℓ		130		
10 ℓ	250	250		
20 ℓ	490	490	520	
30 ℓ		740	780	
50 ℓ		1,250	1,330	
75 ℓ			2,000	
100 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

(단위 : 원)

용 도	일 반 용			비 고
용 량	10 ℓ	20 ℓ	50 ℓ	
가 격	410	640	1,40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별표 4]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8조제2호 관련)**

용 량	용 도
5ℓ	가정용
10ℓ	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20ℓ	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30ℓ	가정용, 영업용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다량배출자용)
75ℓ	영업용
100ℓ	공공용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  
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의2 (생 략)

제15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중

제11조의3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제15조(종량제 실시) ① -----  
-----  
----- 생활폐기물 -----  
-----

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생략)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 재사용봉투, 영업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 생활폐기물중 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③·④ (생략)

제18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는 흰색

-----.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  
-----  
-----  
---. -----  
----- 영업용봉투  
-----  
---.

② -----  
-----  
-----  
-----  
----- 영업용봉투-----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  
-----  
-----.

- 1. -----  
-----

(반투명), 재사용봉투는 연녹색, 영업용봉투는 오렌지색(주황), 사업장용봉투는 옅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하고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용봉투는 흰색(반투명)으로 한다.

2. 3. (생략)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② (생략)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  
-----  
-- 공공용봉투-----  
-----  
-----  
-----  
-----.

2. 3. (현행과 같음)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단서 삭제>

##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제16조제3항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류</th> <th>품 목</th> <th>배 출 요 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6 . 플라 스틱 류</td> <td>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td> <td>▷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며 뚜껑은 재질에 따라 배출</td> </tr> <tr> <td>페스티로폼,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td> <td>▷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시에는 물로 헹군 후 배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 . 비닐 류</td> <td>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 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td> <td>▷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td> </tr> </tbody> </table>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u>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u> <u>일반규격봉투가격</u>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제사용</th> <th>가정용</th> <th>영업용</th> <th>사업장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5ℓ</td> <td></td> <td>130</td> <td></td> <td></td> <td></td> </tr> <tr> <td>10ℓ</td> <td>250</td> <td>250</td> <td></td> <td><b>400</b></td> <td></td> </tr> <tr> <td>20ℓ</td> <td>490</td> <td>490</td> <td>520</td> <td><b>800</b></td> <td></td> </tr> <tr> <td>30ℓ</td> <td></td> <td>740</td> <td>780</td> <td></td> <td></td> </tr> <tr> <td>50ℓ</td> <td></td> <td>1,250</td> <td>1,330</td> <td><b>2,000</b></td> <td></td> </tr> <tr> <td>75ℓ</td> <td></td> <td></td> <td>2,000</td> <td><b>3,000</b></td> <td></td> </tr> <tr> <td>100ℓ</td> <td></td> <td></td> <td>2,680</td> <td><b>4,000</b></td> <td></td> </tr> <tr> <td>판매이윤</td> <td colspan="5">공급가격의 7%</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u>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u>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용 도</th> <th colspan="3">일 반 용</th> <th>사업장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용 량</td> <td>10ℓ</td> <td>20ℓ</td> <td>50ℓ</td> <td><b>50ℓ</b></td> <td></td> </tr> <tr> <td>가 격</td> <td>410</td> <td>640</td> <td>1,400</td> <td><b>1,720</b></td> <td></td> </tr> <tr> <td>판매이윤</td> <td colspan="4">공급가격의 7%</td> <td><b>제 외</b></td> </tr> </tbody> </table>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6 . 플라 스틱 류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며 뚜껑은 재질에 따라 배출	페스티로폼,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	▷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시에는 물로 헹군 후 배출	7 . 비닐 류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 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구분	제사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비 고	5ℓ		130				10ℓ	250	250		<b>400</b>		20ℓ	490	490	520	<b>800</b>		30ℓ		740	780			50ℓ		1,250	1,330	<b>2,000</b>		75ℓ			2,000	<b>3,000</b>		100ℓ			2,680	<b>4,000</b>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용 도	일 반 용			사업장용	비 고	용 량	10ℓ	20ℓ	50ℓ	<b>50ℓ</b>		가 격	410	640	1,400	<b>1,720</b>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b>제 외</b>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제16조제3항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 류</th> <th>품 목</th> <th>배 출 요 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6 . 플 라 스 틱 류</td> <td>투명페트병</td> <td>▷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지를 제거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td> </tr> <tr> <td>그 외 플라스틱 제품</td> <td>▷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이 묻지 않은 상태로 배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 . 스 티 로 폼 류</td> <td>페스티로폼,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td> <td>▷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시에는 물로 헹군 후 배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 . 비 닐 류</td> <td>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 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td> <td>▷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td> </tr> </tbody> </table>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u>규격봉투 판매가격(제15조제2항 관련)</u> <u>일반규격봉투가격</u>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제사용</th> <th>가정용</th> <th>영업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5ℓ</td> <td></td> <td>130</td> <td></td> <td></td> </tr> <tr> <td>10ℓ</td> <td>250</td> <td>250</td> <td></td> <td></td> </tr> <tr> <td>20ℓ</td> <td>490</td> <td>490</td> <td>520</td> <td></td> </tr> <tr> <td>30ℓ</td> <td></td> <td>740</td> <td>780</td> <td></td> </tr> <tr> <td>50ℓ</td> <td></td> <td>1,250</td> <td>1,330</td> <td></td> </tr> <tr> <td>75ℓ</td> <td></td> <td></td> <td>2,000</td> <td></td> </tr> <tr> <td>100ℓ</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판매이윤</td> <td colspan="4">공급가격의 7%</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u>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격</u>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용 도</th> <th colspan="3">일 반 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용 량</td> <td>10ℓ</td> <td>20ℓ</td> <td>50ℓ</td> <td></td> </tr> <tr> <td>가 격</td> <td>410</td> <td>640</td> <td>1,400</td> <td></td> </tr> <tr> <td>판매이윤</td> <td colspan="4">공급가격의 7%</td> </tr> </tbody> </table>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6 . 플 라 스 틱 류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지를 제거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그 외 플라스틱 제품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이 묻지 않은 상태로 배출	7 . 스 티 로 폼 류	페스티로폼,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	▷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시에는 물로 헹군 후 배출	8 . 비 닐 류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 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구분	제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 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5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용 도	일 반 용			비 고	용 량	10ℓ	20ℓ	50ℓ		가 격	410	640	1,40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6 . 플라 스틱 류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며 뚜껑은 재질에 따라 배출																																																																																																																																																																							
	페스티로폼,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	▷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시에는 물로 헹군 후 배출																																																																																																																																																																							
7 . 비닐 류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 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구분	제사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비 고																																																																																																																																																																				
5ℓ		130																																																																																																																																																																							
10ℓ	250	250		<b>400</b>																																																																																																																																																																					
20ℓ	490	490	520	<b>800</b>																																																																																																																																																																					
30ℓ		740	780																																																																																																																																																																						
50ℓ		1,250	1,330	<b>2,000</b>																																																																																																																																																																					
75ℓ			2,000	<b>3,000</b>																																																																																																																																																																					
100ℓ			2,680	<b>4,000</b>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용 도	일 반 용			사업장용	비 고																																																																																																																																																																				
용 량	10ℓ	20ℓ	50ℓ	<b>50ℓ</b>																																																																																																																																																																					
가 격	410	640	1,400	<b>1,720</b>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b>제 외</b>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6 . 플 라 스 틱 류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지를 제거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그 외 플라스틱 제품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이 묻지 않은 상태로 배출																																																																																																																																																																							
7 . 스 티 로 폼 류	페스티로폼,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	▷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시에는 물로 헹군 후 배출																																																																																																																																																																							
8 . 비 닐 류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 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구분	제사용	가정용	영업용	비 고																																																																																																																																																																					
5ℓ		130																																																																																																																																																																							
10ℓ	250	250																																																																																																																																																																							
20ℓ	490	490	520																																																																																																																																																																						
30ℓ		740	780																																																																																																																																																																						
50ℓ		1,250	1,330																																																																																																																																																																						
75ℓ			2,000																																																																																																																																																																						
100ℓ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용 도	일 반 용			비 고																																																																																																																																																																					
용 량	10ℓ	20ℓ	50ℓ																																																																																																																																																																						
가 격	410	640	1,400																																																																																																																																																																						
판매이윤	공급가격의 7%																																																																																																																																																																								

[별표 4]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8조제2호 관련)**

용 량	용 도
5ℓ	가정용
10ℓ	가정용, <b>사업장용</b> ,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20ℓ	가정용, 영업용, <b>사업장용</b> ,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30ℓ	가정용, 영업용
50ℓ	가정용, 영업용, <b>사업장용</b> , 공공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다량배출자용)
75ℓ	영업용, <b>사업장용</b>
100ℓ	<b>영업용, 사업장용</b>

[별표 4]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8조제2호 관련)**

용 량	용 도
5ℓ	가정용
10ℓ	가정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20ℓ	가정용, 영업용, 재사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30ℓ	가정용, 영업용
50ℓ	가정용, 영업용, 공공용,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용(일반용, 다량배출자용)
75ℓ	영업용
100ℓ	공공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개정으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환경 미화원 안전기준 신설 및 환경부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한 개정 추진으로 비용이 별도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 청소행정과 행정7급 성명 정명주(02-3423-5974)